붙임15 **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**

Ⅰ 편의제공 대상

○ **2027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능직(총무·비서)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** 응시원서 접수자 중, **원서접수 마감일 현재,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**장애인**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**상이등급 기준에 해당**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**외부 신체장애**로 인해 **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**이 있는 사람

○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·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Ⅱ 편의제공 신청 절차

○ 면접전형 편의제공 신청은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며, 서류전형 결과 발표 이후 **신청**하시기 바랍니다.

편의제공 신청
채용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
①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③ (필요 시)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**※ [참고1] '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' 확인**

⇩

결과 확인
담당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개별 유선 연락

Ⅲ 편의제공 신청 유의사항

○ [참고1]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**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** 등을 사전에 **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

○ **면접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**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① **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** 등을 **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**하여야 합니다.

○ **의사진단서**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에서 해당 시험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급**받은 **원본만 유효하게 인정**됩니다([참고 2]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

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※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
○ 편의제공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플랫폼 Q&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|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** | **면접시험**

장애유형		편의제공 내용
지체장애	상지	▸ 전담도우미 지원 ▸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▸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▸ 경험·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·검토 시간 1.5배 연장
	하지	▸ 전담도우미 지원 ▸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▸ 휠체어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 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장애		▸ 전담도우미 지원 ▸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▸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▸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▸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▸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▸ 경험·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·검토 시간 1.5배 연장 ▸ 면접시간 1.5배 연장
시각장애		▸ 전담도우미 지원 ▸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▸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▸ 관련서식 확대 제공 ▸ 관련서식 점자 지원 ▸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▸ 경험·상황 면접과제 및 개인발표과제 작성·검토 시간 1.5배 연장
청각장애		▸ 의사전달보조요원(수어통역사 등) 지원 ▸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▸ 보조공학기기(인공와우 등) 착용 허용 ▸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▸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▸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▸ 면접시간 1.5배 연장
기타		▸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* 경험·상황 면접과제 준비 시간 1.5배 연장, 면접시간 1.5배 연장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므로 진단서 원본 제출 필요(종합병원 이상)

참고 2 〔해당 응시자〕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□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
※ **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**받아야 하며, **전문의의 면허번호**와 **서명(날인)**이 **기재**되어 있어야 함

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**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** 등은 **증빙서류**로 **불인정**

※ **임신부**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**의사소견서** 또는 **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(임신주수 또는 예정일 포함)**

□ 발급일자: 해당 시험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 (원본)**

ㅇ **예시**

구 분	직원 채용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26년 11월 25일
진단서 발급일	2022년 11월 26일 이후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① **(장애)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**

*** 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**

② **(장애로 인한)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**

③ **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**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면접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*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

<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**장애유형 및 정도**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**시력/시야**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**시험 관련 불편사항**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**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**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**장애유형 및 정도**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**시력**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**시험 관련 불편사항**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**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**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**장애유형 및 정도**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**증상**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**시험 관련 불편사항**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**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**: 시험시간 연장
기 타		① **장애유형 및 정도**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**증상**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**시험 관련 불편사항**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**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**: 시험시간 연장 **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**

*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 **(소견서 불인정)**